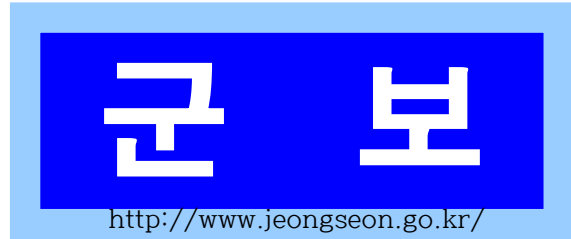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8호 2012. 1. 4. (수)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8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규칙 제118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 정선군규칙 제1189호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2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97호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16
- 정선군훈령 제39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19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144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1
- 정선군고시 제2011-145호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고시..... 22
- 정선군고시 제2011-152호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3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680호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26
- 정선군공고 제2011-683호 2012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공고..... 28
- 정선군공고 제2011-685호 정선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
- 정선군공고 제2011-686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2
- 정선군공고 제2011-691호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조정 공시 78
- 정선군공고 제2011-704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80
- 정선군공고 제2011-704호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2012년 예산편성 현황 공고... 81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01. 04.

정선군 규칙 제118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67	267	11	86	24	87	92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40	220	6	52	17	67	78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3	10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1	67	3	9	5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8			1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8	2				1	5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1			1			
	농업·지도사		2			2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7급 소계			141	73	1	18	6	19	24
	행정		47	25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5	2				3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4			2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8급 소계		102	44	0	18	4	18	18
		행정	28	14			0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직급별								
1	보건·간호·의기	3			3			
	9급 소계	49	23	0	5	1	9	11
	행정	12	4				5	3
	세무	3						3
	사회복지	11	5				2	4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4	2				1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3	2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2	2	0	0	0	0
2	연구사 소계	2	2	0	0			
	학예연구·별정	1	1					
3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계	19	3	0	16			
4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7	3	0	14			
	농촌지도사	14	3		11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3			3			
별정직 계		12	0	0	12	0	0	0
5	6급상당 소계	11			11			
	보건진료원	11			1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93	41	5	6	7	20	14
6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가·조무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7급 소계		15	11	0	1	2	1	0
	I	토목	1	1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1	0				1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3	2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1	3	1	0	2	5	0
	II	토목	1	0			1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0	
		영사	1	1					
		운전	4	0	0	0		4	0
		필기	1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1	0	1				
	9급 소계		31	11	2	2	1	8	7
	III	토목	3	3					
		전화상담	0	0					
		통신	0	0					
		전기	1				1		
		기계	5					2	3
		운전	9	1	1	1		3	3
		필기	3	2	0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8	4		0	0	3	1
	10급 소계		32	13	2	3	1	6	7
	IV	토목	1	1					
		통신	0	0					
		전화상담	1	1					
		전기	1	1			0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기계		1				0	0	1
	화공		0						
	열관리		1	1					
	운전		9	3		3		1	2
	위생		0	0					
	워드		1	0	1				
	전산		0	0					
	필기		6	4			1	1	
	조무		10	1	1	0		4	4
	통신·전기		1	1					

개 정 이 유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7명 (증 3명)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8명(증 2명)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4명(현행과 같음)
 - 읍 면 : 178명(증 1명)
- 직렬별 정원 조정
 - 행정8급 증5명 ↔ 기능8급 △5명
 - 사회복지9급 증 3명(순증)
 - 기록연구사 증1명 ↔ 행정9급 △1명
 - 행정·사회복지7급 증 1명 ↔ 행정7급 △1명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01. 04.

정선군 규칙 제118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삭제하고,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5. (생 략) <u>56.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u> 57.~73. (생 략)	제5조(주민생활지원과) ----- -----. 1.~55. (현행과 같음) <u>56. <삭제></u> 57.~73. (현행과 같음)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0. (생 략) <u><신 설></u>	제6조(자치행정과) ----- -----. 1.~110. (현행과 같음) <u>111.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u>

개 정 이 유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부서별 업무조정(제5조 및 제6조)
 -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01. 04.

정선군 규칙 제1189호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	차 형 (자동차관리법 적용)	배정대상	차량교체 가능조건
승 용 (전 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수 · 부군수 · 군 의회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군수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승 용 (의전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군 의회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소형승용차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 단위부서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내용연수 8년 이상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군의본청 · 단위부서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특수용	특수용도 제작차량 또는 특수목적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내용연수 6년 이상

개정전·후 대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	차 형 (자동차관리법 적용)	배 정 대 상	현 행	개정안
			최단운행 기준연한	차량교체 가능조건
승 용 (전 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수 · 부군수 · 군 의회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기관장 5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군수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승 용 (의전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군 의회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단, 대형은 5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소형승용차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 단위부서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단위부서		
승 합 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간	내용연수 8년 이상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화 물 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모두 충족
특 수 용	특수용도 제작차량 또는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6년간	내용연수 6년 이상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관용차량의 교체가능 조건을 강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차종·차형·배정대상 : 변동없음
- 내구연한 조정
 - 승 용 :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 모두 충족
(※ 내용연수 1년 증가, 총 주행거리 추가)
 - 승합용 :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 모두 충족
⇒ 대형승합 : 내용연수 8년(변동없음)
⇒ 중형승합 : 내용연수 1년 감소, 총 주행거리 추가
⇒ 소형승합 : 내용연수 1년 증가, 총 주행거리 추가
 - 화물용 : 내용연수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이상 모두 충족
(※ 내용연수 1년 증가, 총 주행거리 추가)

훈 령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2. 01. 01.

정선군 훈령 제397호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따라 농정시책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정선군 농업·농촌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의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 지원율을 투명하게 형평성을 기하며,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내 보조금 지원 총액제를 설정하므로 여러 농업인에게 고르게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선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 대상사업)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호의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농정시책사업
3. 고랭지 대체작목 및 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한우증식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9. 마을 및 지역단위로 권장하는 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10. 기타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사업자 선정)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의 사업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보조사업의 활용 또는 이용도가 높은 농가 및 생산자 조직은 우선지원
2. 보조사업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 조직은 우선지원
3. 취미로 농사를 짓거나 농업 외 소득이 높은 부업농은 지원대상자에서 후순위로 지원

제6조(보조 지원율)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보조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도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은 별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군 자체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50%이내로 한다.
3. 공익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70%이내로 할 수 있다.
4. 위 3호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은 물론 군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80%이상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서 별도 정한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에 따르고, 기타 자체사업의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축시설분야는 10년으로 한다.
2. 장비 및 기타 시설물은 5년으로 한다.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보조지원 총액제 적용)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위하여 규정 제7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지원 총액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다.

1. 농업인(농가별)은 50,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 영농법인 및 작목반은 100,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500,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4. 국가 또는 도 지원 보조사업은 별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농업·농촌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의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보조대상 사업 규정(제4조)
- 보조사업자 선정(제5조)
- 보조 지원을 규정(제6조)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규정(제7조)
- 사후관리기간내 보조지원 총액상한제 규정(제8조)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2. 01. 04.

정선군 훈령 제39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4-1,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7명 (증 3명)
-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8명(증 2명)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4명(현행과 같음)
 - 읍 면 : 178명(증 1명)
 - － 직렬별 정원 조정
 - 행정8급 증5명 ↔ 기능8급 △5명
 - 사회복지9급 증 3명(순증)
 - 기록연구사 증1명 ↔ 행정9급 △1명
 - 행정·사회복지7급 증 1명 ↔ 행정7급 △1명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1-144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92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년 12 월 21 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310,346,832	302,886,535	7,460,297	2.46%
일반회계	270,529,099	265,912,596	4,616,503	1.74%
기타특별회계	30,353,698	28,326,825	2,026,873	7.16%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1,221,345	1,221,345	0	0%
의료급여기금	614,897	625,258	△10,361	△1.66%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52,867	52,334	233	0.45%
기반시설부담금	86,237	86,237	0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05,559	305,559	0	0%
주택사업	25,640	25,640	0	0%
주차장	244,678	243,678	1,000	0.41%
수질개선	27,802,775	25,766,774	2,036,001	7.90%
상수도사업	9,464,035	8,647,114	816,921	9.45%

정선군 고시 제2011-145호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이 제192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년 12 월 23 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279,270,284	278,238,300	1,031,984	0.37%
일반회계	248,699,062	245,527,244	3,171,818	1.29%
기타특별회계	22,337,206	25,156,739	△2,819,533	△11.21%
의료급여기금	579,857	592,060	△12,203	△2.06%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3,606,246	302,109	3,304,137	1,093.69%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132,619	52,334	80,285	153.41%
기반시설부담금	88,398	78,289	10,109	12.91%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35,672	326,253	9,419	2.89%
주택사업	94,542	20,220	74,322	367.57%
주차장	261,000	207,000	54,000	26.09%
수질개선	17,238,872	23,578,474	△6,339,602	△26.89%
상수도사업	8,234,016	7,554,317	679,699	9.00%

정선군 고시 제2011-152호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I. 건 명 : 2012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12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61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4) 가감산특례
-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2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II. 건 명 :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34,231종

- 1)정의 2)용어해설 3)시가표준액 4)과표적용요령 5)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10,799종

-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시가표준액
- 5)적용요령 6)산출예시

다. 선 박 : 135종

-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 4)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5)시가표준액 적용방법

라. 항 공 기 : 144종

-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표 5)적용방법

마. 시 설 물 : 2,036종 (부수시설물 369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바. 입 목 : 21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방법

사. 기 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골프·콘도)

※ 해당 물건별로 고시

2. 세부사항 :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3. 정선군 2012년도 회원권 시가표준액 결정

○콘도회원권 시가표준액 결정

(단위:천원)

연번	콘도명	소재지	면적(㎡)	구좌별	2012 시가표준액	비고
1	메이힐스리 조트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71	2	100,800	
				5	40,320	
				10	20,160	
2			87	2	123,750	
				5	49,500	
				10	24,750	
3			107	2	153,000	
				5	61,200	
				10	30,600	
4			142	2	203,400	
				5	81,360	
				10	40,680	
5			150	2	214,200	
				5	85,680	
				10	42,840	
6			174	2	248,850	
				5	99,540	
				10	49,770	
7			194	2	276,750	
				5	110,700	
				10	55,350	
8			213	2	304,200	
				5	121,680	

				10	60,840	
9			214	2	305,550	
				5	122,220	
				10	61,110	
10			239	2	342,450	
				5	136,980	
				10	68,490	
11			74.42 ~87.3	12	23,960	
				6	47,920	
				2	143,760	
				1	287,520	
12			114.82 ~116.66	12	38,200	
				6	76,400	
				2	229,200	
				1	458,400	
13	하이캐슬 리조트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62	124.18 ~126.13	12	42,600	
				6	85,200	
				2	255,600	
				1	511,200	
14			155.51	12	56,900	
				6	113,800	
				2	341,400	
				1	682,800	
15			233.80	12	88,500	
				6	177,000	
				2	531,000	
				1	1,062,000	
16			401.47	12	156,900	
				6	313,800	
				2	941,400	
				1	1,882,8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1-680호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3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1.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12. 21(수) ~ 2012. 01. 06(금)

2. 의견제출 방법

붙임조서의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민원봉사과 ☎ 033)560-2183, fax 033)560-2407,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봉양리 267)정선군청 민원봉사과)】

가. 예비 도로명 등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도로명의 변경 절차



4. 첨부

○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서 1부.

정선군도로명변경에따른주민의견수렴조서

순번	위계	관할 행정 구역	변경전						변경후						
			현재 도로명	기점	종점	길이 (m)	폭 (m)	변경 회 망 사유	예비 도로명	기점	종점	길이 (m)	폭 (m)	기 초 간 격	변 경 사유
1	길	여량면	외봉정길	여량면 유천리 39-2	여량면 유천리 산 331	788.94	3	*봉정리에서 유천리로 행정리 변경 * "지경" 이라는 지명경희망	1안) 윗지경길	여량면 유천리 39-2	여량면 유천리 산 331	788.94	3	20m	행정리 변경
									2안) 청용길						
									3안) 성황길						

정선군공고 제2011-683호

2012학년도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공고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1. 신청기간 : 2011. 12. 27 ~ 2012. 1. 27(31일간)
2. 선발인원 : 20명(남 10명, 여 10명)
※ 신입생 14명, 재학생 6명(단, 향토학사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3. 입사신청 자격 :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4. 자격제한
 -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5. 신청 구비서류
 -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별첨 서식 1) - 자치행정과, 읍면비치
 - 건강진단서 1부(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진단 포함. 별첨 서식 2)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증명서)
 -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증명서)
6. 선발자 확정 : 2012. 02. 04(토)이후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7. 문의사항 및 신청서류 제출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185)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서식 1>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신청자	학 교 명		대 학교		대 학		과		년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동(읍·면)			
	년		중 학 교		시(군)		동(읍·면)			
	년		고등학교		시(군)		동(읍·면)			
친권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근무처				직 위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 제6조에 의거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친권자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서식 2>

건강진단서

제 호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대학	학(부, 대학원)			학년	학번(수험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검사항목	검사결과
B형 간염	항원(), 항체()
흉부 X-선 검사	
일반뇨검사	
매독반응검사 (VDRL 또는 RPR)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기숙사) 제출용

발행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직인)
의료기관주소 :	
의료기관전화 :	
면허번호 :	
의사성명 :	(인)

※ 본 페이지의 검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검사받으시면, 검사 기관(해당 병원) 자체 건강진단서 양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자료)

□ 기숙사비 내역(2012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내역)

향토학사(다 산 관 · 예 지 원)					
구 분	관리비	식 비	보증금	사생회비	합계
다산관 /예지원	357,850	565,050	-	3,000	925,900

■ 향토학사(다산관·예지원)는 식비가 의무식임.

□ 향토학사(예지원,다산관) 시설현황

구 분	향토학사(다산관, 예지원)	비 고
○위 치	○ 캠퍼스 내부	
○취사행위	○ 불가능	
○냉 · 난방	○ 중앙 냉 · 난방시스템	
○건립년도	○ 2000.3	
○건물형태	○ 2인1실 ○ 각 층 공동 세면실 · 화장실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생활관 위치 안내도



정선군 공고 제2011~685호

정선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이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2
-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2. 개정이유

- 농촌지역 및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집중화 현상이 심화
- 읍면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수조례 개정 필요

3. 개정 주요골자

가. 리 조정(안)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분할	폐지			
합 계	181	1			-	증1	182	
정선읍	35						35	
고한읍	19	1				증1	20	
사북읍	13						13	
신동읍	26						26	
화암면	13						13	
남 면	15						15	
여량면	14						14	
북평면	14						14	
임계면	32						32	

나. 기존 이장정수 181명에서 행정리 조정에 따라 182명으로 증원 및 관할 구역 조정

[별표] 개정

⇒ 고한읍에 정선헤피아리아파트 신설에 따라 고한 8리를 일부 분할하여 고한 20리를 신설함에 따라 이장 정수 19명에서 20명으로 증원

다. 주요 조정사유

- 고한8리 지역에 정선헤피아리아파트(2동 140세대)신설로 주거 환경의 변화에 맞게 기존 고한8리 1반,2반,3반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고한 20리를 행정리로 신설하여 총 8개반을 됨.

4. 의견제출

- o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232,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1. 정선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2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상동 일부(시장) 정선군법원, 삼우주택, 정선농협 부근 중동 하동 녹도 일부 관음, 생탄, 세대, 동곡 상동 일부, 적거리 녹도 일부 녹도 일부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실리	5	북실1리 2리 3리 4리 5리	용담, 계봉, 병방치 마미곡, 개간제, 오압, 부곡, 간곡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사내(미천)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2리	석교동, 남덕동, 내반점, 외반점 월천, 송오
	애산리	5	애산1리 2리 3리 4리 5리	병방, 여촌, 신촌 역전 일부 오반 구미, 이절, 개골 역전 일부
	신월리	2	신월1리 2리	와평, 드름터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옛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2리	월평, 사택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2리 3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벽탄, 월평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2리	광석, 군언, 상평, 송단, 모평, 선곡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굴암리	1	굴암리	상굴암, 본동, 하굴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고한읍	고한리	20	고한1리 만항, 평화촌 2리 두문동 일부 3리 두문동 일부, 소두문동 4리 박심리, 상봉 5리 상갈래 일부, 절골 6리 중갈래 일부, 중앙아파트, 새마을사택 7리 중갈래 일부, 진골 8리 구사택 일원, 강원랜드다목적숙소 9리 당목, 대원아파트 일원 10리 시장 일부 11리 막골, 신사택 12리 구 읍사무소 일원 13리 북부사택, 흠아비골 14리 고토일 15리 부금소, 목골, 진밭골 16리 물한이골 17리 양지마을 18리 하갈래 19리 시장 일부 20리 정선군임대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일원
사북읍	직전리	1	직전리 무낼, 피내, 반전, 하동
	사북리	12	사북1리 범바위 2리 사북아파트, 선명1차 아파트 일원 3리 시내 4리 아랫사북, 구 중앙사택 일원 5리 골말 6리 도사곡 7리 웃사북 일부 8리 중앙시장 일원 9리 선명오피스텔, 선명소라파크 일원 10리 웃사북 일부 11리 동원복지아파트 일원 12리 소잡느골
신동읍	예미리	7	예미1리 본동, 의림길 2리 유문동 3리 용거리, 수해민주택 일원 4리 재건촌 5리 노일 일부, 용주골 6리 노일 일부, 역전 7리 납돌
	천포리	1	천포리 예미산, 내곡, 곡길, 본동, 양지마을
	조동리	9	조동1리 절골, 장미연립 일원 2리 안길운 3리 개미촌, 구룡동 4리 시장 일원 5리 함백초등학교 일원 6리 새골 7리 수해민주택 일원 8리 안경다리 9리 함백종고 일원

신동읍	방제리	2	방제1리 2리	매화동, 장재터, 원방제, 미륵골, 둔박골, 덕세 새비재, 설령, 전락촌 새비재, 설령, 전락촌
	가사리	1	가사리	원가사, 남애, 두리골, 황장골, 마차재
	고성리	2	고성1리 2리	평구, 수촌, 고림 내창, 병산, 고방, 신진
	덕천리	1	덕천리	원덕천, 소골, 제장, 연포, 바세, 구포
	운치리	3	운치1리 2리 3리	돈이치, 텃골, 터일, 기곡 수동, 번평, 고재벌 납운돌, 점재, 설론
화암면	화암리	4	화암1리 2리 3리 4리	그림바위, 웃그림바위, 구슬동(큰·작은 구슬동) 미천, 천포, 멧둔지, 싸내 오산, 좌사(양지·음지) 화표동, 큰터, 후원이, 절골
	석곡리	2	석곡1리 2리	억실, 뒤뜰, 수류골, 마덕, 덕거리 상석항, 하석항, 베지름골
	북동리	1	북동리	상북동, 하북동, 월애골, 함바위, 뒷골
	몰운리	2	몰운1리 2리	한치, 되기 몰운, 제동(윗·아랫제동)
	건천리	1	건천리	본동, 큰골, 소일, 송이골
	호촌리	1	호촌리	풍촌, 호명, 어우실
	백전리	2	백전1리 2리	서원기, 정승골, 대지산, 합수거리 노나무골, 한소리, 마당목
남 면	문곡리	3	문곡1리 2리 3리	별어실, 본동(시내), 무른당 탑거리, 점촌, 중간마을, 골말, 상사골, 마차재 자미원, 수리재, 오지구
	무릉리	5	무릉1리 2리 3리 4리 5리	멀미 내자고치, 안자고치, 싸리실, 능전, 덕만, 발구덕 삼거리, 척산 증산(역전) 목산, 정직간
	유평리	2	유평1리 2리	젯마을, 소마평, 아산미, 제기실, 새마을, 매기돌, 능바위, 양지마을 오름실, 삼내, 고일, 버드내, 한치
	낙동리	3	낙동1리 2리 3리	거칠현, 전개, 수발, 노름골, 창말 괌들, 양지마을, 음지마을, 벳둔, 문두골, 의평 음달(역전), 샘들, 선평
	광덕리	2	광덕1리 2리	수령, 영곡, 광방, 화암, 체운, 석대, 수와우 광탄, 삼종, 송오리, 역전, 갈금, 범소, 서마루
여량면	여량리	5	여량1리 2리 3리 4리 5리	본동 일부, 노고마니, 하곡, 절골 본동 일부 본동 일부, 마산치 본동 일부, 고음동 가금동
	유천리	3	유천1리 2리 3리	송천, 진평, 싸리골 지경, 양지마을, 외봉정 마평, 궁대, 궤재, 하가재
	구절리	3	구절1리 2리 3리	중동 일부, 하절구, 자개, 떡갈밭 양지마을, 절골, 중앙동 중동 일부, 사달

여량면	남곡리	1	남곡리	고사리, 앞시골, 되골, 북바위, 쇠골
	고양리	1	고양리	임지동, 수무골, 삼가, 큰골, 고창골
	봉정리	1	봉정리	본동, 새치, 발면
북평면	장열리	2	장열1리 2리	본동, 동하지, 바람부리 가평, 하남골
	북평리	6	북평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거무소, 본동(후평), 하동 붉은언덕, 석두 상동 일부 하동 항골, 강선암, 노루목, 아창골, 차랑골, 용소골, 먹골, 약물골 상동 일부
	남평리	2	남평1리 2리	용바우, 오음동, 신촌, 새마을, 장승백이 다실동, 한대동, 봉화치, 새리골(새을골), 바드란이, 복지골
	문곡리	1	문곡리	본동, 큰골, 적은골, 스므골, 백운동
	나전리	2	나전1리 2리	본동, 야미(배미), 어나전(어뢰), 어도원, 할미골, 명지내, 미루니, 윗터골 장평, 다래골, 세미골, 줄평
	숙암리	1	숙암리	우면주(본동), 대지(큰터), 빗발, 단임, 높은터, 깊은터, 메밀굽이, 소나무터, 장재터, 오장동, 우동골, 절골
	가목리	1	가목리	군대, 가목, 명주목이, 부스베리
임계면	도전리	2	도전1리 2리	외도전 내도전, 너래골, 기추목이, 장아리, 아우라지, 사시내골, 매바위
	직원리	2	직원1리 2리	밭땃, 군대 일부 구룡동, 노직동, 피원, 당두, 골말, 역마루
	임계리	4	임계1리 2리 3리 4리	점촌, 장성거리, 안검무일부, 관말, 귀새 태봉안, 골말, 도진이, 가슬비 화성, 금방동, 고내 명소, 평양말, 노루마당, 갈마동
	송계리	8	송계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송원, 문둥이골 골말 일부, 웅기장골, 공원묘지골 송계본동 일부 윗말, 고독불 안검무 일부, 신현동(새버리), 골말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송계본동 일부 소탄, 소메기골, 도수장골, 골말일부
	봉산리	3	봉산1리 2리 3리	송촌, 점구비, 장찬, 안산 본동, 바위안(암내동) 등봉골, 말루, 구미
	낙천리	3	낙천1리 2리 3리	역평, 광산골, 석동거리, 늪밭골, 탑거리, 오목골 일부 미락, 발미락, 사을기 혈천, 오누골
	용산리	2	용산1리 2리	월탄, 햇골, 오목골 일부, 세류골, 명당바위 용동, 돈들(전평), 범정골
	문래리	3	문래1리 2리 3리	양지, 골지본동, 마태골 하동, 감마동 음지마을, 석둔, 세루골, 장터거리

임계면	덕암리	1	덕암리	작은소래, 큰소래, 새이말, 벳둔골, 구룡동, 무널골, 동무지, 삼베일, 버실이, 위밀이골, 송이재, 장강촌, 공전리
	고양리	1	고양리	적목동, 새이말, 덕치, 수기동, 하승두, 상승두, 고수말이, 하일, 소라곡, 절골, 다래재, 손오거리
	반천리	2	반천1리 2리	성북, 노일, 도장골 일부, 산성, 여우새, 어전, 월루, 덕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11~686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반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정선군 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4조

다. 정선군 반운영규칙 제2조

2. 개정이유

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반 신설 및 조정 필요

나.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인구 격감지역 반 통폐합

3. 주요골자

가. 조정총괄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분할	폐지			
합 계	986	11	17	—	—	감6	980	
정선읍	231						231	
고한읍	122	8	17			감9	113	
사북읍	139						139	
신동읍	130						130	
화암면	49						49	
남 면	79	3				증3	82	
여량면	65						65	
북평면	64						64	
임계면	107						107	

나. 조정사유

● 고한읍

- 고한4리는 기존 삼봉아파트 13동중 12동이 철거되어 1동만 존립됨에 따른 가구수 감소로 반을 통합

※ 고한4리 1반일부, 4반일부 ⇒ 고한4리 1반으로 통합

고한4리 1반일부, 4반일부, 2반, 3반, 5반, 6반, 7반 ⇒ 고한4리 2반으로 통합

- 고한6리는 (구)중앙아파트 철거와 하이원cc 진입로변 철거로 가구수 감소에 따라 반 통합 및 반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고한6리 2반, 4반, 8반, 11반, 12반, 13반, 14반 ⇒ 고한6리 2반으로 통합

고한6리 9반 ⇒ 고한6리 4반으로 반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고한6리 10반 ⇒ 고한6리 8반으로 반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고한7리는 진골 위험지구 건물철거 및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가구수 감소에 따라 반 통합

※ 고한7리 1반, 2반 ⇒ 고한7리 1반으로 통합

고한7리 5반, 6반, 7반 ⇒ 고한7리 3반으로 통합

- 고한8리 지역에 정선해피아리아아파트(2동 140세대)신설로 주거 환경의 변화에 맞게 기존 고한8리 1반, 2반, 3반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고한20리 행정리로 분리 신설하여 총 8개반을 둬.

※ 고한8리 1반, 2반, 3반 ⇒ 고한20리 1반부터 8반까지 신설

또한 기존 고한8리 12반의 강원랜드다목적숙소가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입주 가구수 증가로 3개반으로 분리

※ 고한8리 12반 ⇒ 고한8리 1반, 2반, 3반으로 분리

- 고한13리 5반 일부가 메히힐스, 고한사북보건지소, 마운틴콘도, 힐콘도 등 새로운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일부 분할 통합

※ 고한13리 5반 일부 ⇒ 고한13리 2반으로 통합

- 고한19리 가구수 감소로 인한 일부 반 통합

※ 고한19리 7반, 8반 ⇒ 고한19리 7반으로 반 통합

● 남면

－ 남면 문곡1리에 수려한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반 신설이 필요

※ 문곡1리(기존8개반) ⇒ 문곡1리 9반, 10반, 11반 (3개반 신설)

다. 반 조정내역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증감
고한읍	고한4리 1반 일부 4반 일부	고한4리 1반	삼봉아파트13동 중 12동 철거, 1동만존립,2개반 일부를 1개반으로 통합	감5 (7개반에서 2개반으로)
	고한4리 1반 일부 2반,3반 4반 일부 5반,6반 7반	고한4리 2반	2반,3반,5반,6반, 7반 가구 전무 2반으로 통합	
	고한6리 2반,4반, 8반,11반 12반,13반 14반	고한6리 2반	(구)중앙아파트 철거와 하이원 cc진입로변 철거로 가구수 감소에 따른 반 통합	감6 (14개반에서 8개반으로)
	고한6리 9반	고한6리 4반	반 조정에 따른 반 명칭 변경	
	고한6리 10반	고한6리 8반		
	고한7리 1반 2반	고한7리 1반	고한7리 진골 위험지구 건물 철거 및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구 감소로 인한, 반 통합	감4 (7개반에서 3개반으로)
	고한7리 3반 4반	고한7리 2반		
	고한7리 5반 6반 7반	고한7리 3반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증감
고 한 읍	고한8리 1반 고한8리 2반	고한20리 1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1호~506호) 고한20리 2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7호~512호) (고한동신교회)	정선해피아리 아파트준공으로 리 분할(행정리 신설)에 따른 반 증가 (기존 고한8리 3개반이 20리로 편입, 5개반은 신설)	증8 (0개반 에서 8개반으 로)
	고한8리 3반	고한20리 3반(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 고한20리 4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1호~1202호) 고한20리 5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3호~1504호) 고한20리 6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5호~1506호) 고한20리 7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1호~1402호) 고한20리 8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3호~1404호)		
	고한8리 12반	고한8리 1반(강원랜드다목적숙소 가동) 고한8리 2반(강원랜드다목적숙소 나동) 고한8리 3반(강원랜드다목적숙소 다동~라동) (흑빛청소년문화센터)		
	고한13리 5반 일부	고한13리 2반(메히힐스,사북고한보건지소, 마운틴콘도, 힐콘도)	세대수 증가로 일부 분할조정	변동 없음
	고한19리 7반 8반	고한19리 7반	세대수 감소로 인한 반 통합	감1
남 면	문곡1리 8반	문곡1리 9반(수려안아파트101동101호~704호) (수려안아파트102동101호~1104호) 문곡1리 10반(수려안아파트103동101호~1106호) 문곡1리 11반(수려안아파트104동101호~1206호)	수려안아파트 신축, 분양에 따른 인구증가 예상(반 신설) (207가구)	증3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232,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1.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1리	제 1반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봉양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봉양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봉양 4리		제 1반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봉양 7리		제 1반	봉양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봉양 8리	제 1반	봉양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9리	제 1반	봉양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봉양 10리	제 1반	봉양 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1리	제 1반	북실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2리	제 1반	북실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북실	3리	제 1반	북실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4리	제 1반	북실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북실	5리	제 1반	북실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덕송	1리	제 1반	덕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덕송	2리	제 1반	덕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애산	1리	제 1반	애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애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애 산 3리	제 1반	애 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애 산 4리	제 1반	애 산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애 산 5리	제 1반	애 산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신 월 1리	제 1반	신 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신 월 2리	제 1반	신 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덕 우 리	제 1반	덕 우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여 탄 리	제 1반	여 탄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회동 1리	제 1반	회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회동 2리	제 1반	회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용탄 1리	제 1반	용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용탄 2리	제 1반	용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용탄 3리	제 1반	용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하 1리	제 1반	광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하 2리	제 1반	광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굴 암 리 제 1반	굴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가 수 리 제 1반	가 수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읍	고한 1리 제 1반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중전 고한 4리 제 1반 일부, 제4반 일부	
	" 제 2반	중전 " 제 1반 일부, 제2-3반, 제4반 일부 제5-7반	
	" 제3반(삭제)	" 제 3반(삭제)	
	" 제4반(삭제)	" 제 4반(삭제)	
	" 제5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6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7반(삭제)	" 제 7반(삭제)	
	고한 5리 제 1반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고한 6리 제 1반	
	" 제 2반	중전 " 제 2반, 제4반, 제8반, 제11-14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중전 " 제 9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중전 " 제 10반	
	" 제 9반(삭제)	" 제 9반 (삭제)	
	" 제 10반(삭제)	" 제 10반(삭제)	
	" 제 11반(삭제)	" 제 11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2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3반(삭제)	
	" 제 14반(삭제)	" 제 14반(삭제)	
	고한 7리 제 1반	중전 고한 7리 제 1-2반	
	" 제 2반	중전 " 제 3-4반	
	" 제 3반	중전 " 제 5-7반	
	" 제 4반(삭제)	" 제 4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5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6반(삭제)	
	" 제 7반(삭제)	" 제 7반(삭제)	
	고한 8리 제 1반	중전 고한 8리 제 12반 일부(강원랜드다목적숙소가동)	
	" 제 2반	중전 " 제 12반 일부(강원랜드다목적숙소가동)	
	" 제 3반	중전 " 제 12반 일부(강원랜드다목적숙소가동)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삭제)	" 제 12반(삭제)	

명 칭			구 역	
고한 9리	제 1반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고한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고한 11리	제 1반	고한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고한1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고한13리	제 1반	
"	제 2반	중전	"	제 5반일부 (메이힐스,사북고한보건지소 마운틴콘도,힐콘도)
"	제 3반	"	"	제 3반
"	제 4반	"	"	제 4반
"	제 5반	"	"	제 5반
"	제 6반	"	"	제 6반
"	제 7반	"	"	제 7반
"	제 8반	"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한1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고한1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고한1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고한1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중전	"	제 7-8반
"	제 8반(삭제)		"	제 8반(삭제)
고한 20리	제 1반	중전	고한 8리	제 1반(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101호~506호)
"	제 2반	중전	"	제 2반(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107호~512호) (고한동신교회)
"	제 3반	중전	"	제 3반(정선군임대아파트 나동)

명 칭			구 역	
	"	제 4반	고한20리	제 4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1호~1202호)
		제 5반		제 5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3호~1504호)
	"	제 6반	"	제 6반(해피아리아파트101동105호~1506호)
	"	제 7반	"	제 7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1호~1402호)
	"	제 8반	"	제 8반(해피아리아파트102동103호~1404호)
사북읍	직 전 리	제 1반	직 전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1리	사북 1리	제 1반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사북 2리	사북 2리	제 1반	사북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명 칭			구 역		
사북	3리	제 1반	사북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4리	제 1반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5리	제 1반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5리	제 5반	사북	5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사북	5리	제 9반	사북	5리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사북	5리	제 13반	사북	5리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
사북	5리	제 17반	사북	5리	제 17반
	"	제 18반		"	제 18반
	"	제 19반		"	제 19반
	"	제 20반		"	제 20반
사북	6리	제 1반	사북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6리	제 5반	사북	6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사북	6리	제 9반	사북	6리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명 칭			구 역		
사북 7리	제 1반		사북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사북 8리	제 1반		사북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9리	제 1반		사북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명 칭			구 역		
사북	10리	제 1반	사북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11리	제 1반	사북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	
	"	제 17반		" 제 17반	
	"	제 18반		" 제 18반	
	"	제 19반		" 제 19반	
	"	제 20반		" 제 20반	
	"	제 21반		" 제 21반	
사북	12리	제 1반	사북1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예미 1리	제 1반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2리	제 1반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예미 3리	제 1반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4리	제 1반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5리	제 1반	예미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예미 6리	제 1반	예미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예미 7리	제 1반		예미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천 포 리	제 1반		천 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1리	제 1반		조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조동 2리	제 1반		조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3리	제 1반		조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4리	제 1반		조동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조동 5리	제 1반		조동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조동	6리	제 1반	조동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조동	7리	제 1반	조동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8리	제 1반	조동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9리	제 1반	조동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방제	1리	제 1반	방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방제	2리	제 1반	방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가 사 리	제 1반	가 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성 1리	제 1반	고성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고성 2리	제 1반	고성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덕 천 리	제 1반	덕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1리	제 1반	운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2리	제 1반	운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운치 3리	제 1반	운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면	화암 1리	제 1반	화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4리	제 1반		화암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1리	제 1반		석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2리	제 1반		석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 동 리	제 1반		북 동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몰운 1리	제 1반		몰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몰운 2리	제 1반		몰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건 천 리	제 1반		건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호 촌 리	제 1반		호 촌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1리	제 1반	백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2리	제 1반	백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남면	문곡 1리	제 1반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수려안아파트101동101호~704호) (수려안아파트102동101호~1104호)
	"	제 10반	"	제 10반	(수려안아파트103동101호~1106호)
	"	제 11반	"	제 11반	(수려안아파트104동101호~1206호)
	문곡 2리	제 1반	문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무릉 2리	제 1반	무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3리	제 1반		무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무릉 4리	제 1반		무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무릉 5리	제 1반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유평 1리	제 1반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유평 2리	제 1반		유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낙동 1리	제 1반	낙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동 2리	제 1반	낙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동 3리	제 1반	낙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덕 1리	제 1반	광덕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덕 2리	제 1반	광덕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면	여량 1리	제 1반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3리	제 1반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 4리	제 1반	여량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여량 5리	제 1반		여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1리	제 1반		유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유천 2리	제 1반		유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3리	제 1반		유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1리	제 1반		구절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구절 2리	제 1반		구절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3리	제 1반		구절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북평면	" 제 3반	" 제 3반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남 곡 리 제 1반	남 곡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 정 리 제 1반	봉 정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장 열 1리 제 1반	장 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장 열 2리 제 1반	장 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 평 1리 제 1반	북 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 평 2리 제 1반	북 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 평 3리 제 1반	북 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평	4리	제 1반	북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5리	제 1반	북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평	6리	제 1반	북평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남평	1리	제 1반	남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남평	2리	제 1반	남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문곡리		제 1반	문곡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나전	1리	제 1반	나전	1리	제 1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나전 2리	제 1반	나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숙 암 리	제 1반	숙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가 목 리	제 1반	가 목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1리	제 1반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2리	제 1반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1리	제 1반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1리	제 1반	임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 2리	제 1반	임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3리	제 1반	임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 4리	제 1반	임계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	제 2반		"	제 2반
송계 1리	제 1반		송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2리	제 1반		송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3리	제 1반		송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4리	제 1반		송계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송계 5리	제 1반		송계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6리	제 1반		송계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7리	제 1반		송계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송계 8리	제 1반		송계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1리	제 1반		봉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봉산	2리	제 1반	봉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3리	제 1반	봉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1리	제 1반	낙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2리	제 1반	낙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천	3리	제 1반	낙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용산	1리	제 1반	용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용산	2리	제 1반	용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1리	제 1반	문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2리	제 1반	문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문래	3리	제 1반	문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덕 암 리		제 1반	덕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반천 1리	제 1반	반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반천 2리	제 1반	반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1-691호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조정된 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 12. 30

정 선 군 수

□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조정 공시

1.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가. 공시기준일 : 2011년 7월 1일

나. 조정필지 : 임계면 낙천리 703

다.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당 가격(원)

라. 공시방법 : 공고문 게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2. 개별공시지가 정정 지가

가. 조정필지 : 정선읍 신월리 304외 3필지(10건)

나.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당 가격(원)

라. 공시방법 : 공고문 게시 및 개별통지

□ 이의신청방법

1.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2. 개별공시지가 정정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2. 1. 31일까지 이의신청

□ 기타사항

문의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결정.공시 내역

(단위:원/m²)

일련번호	소재지	조정전 결정지가	조정후 결정지가
1	임계면 낙천리 703	4,300	6,840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내역

토지 소재지			정정년도	조정 전 결정지가	조정 후 결정지가
리별	지번	지목			
정선읍 신월리	304	임	2008	6,050	1,210
정선읍 신월리	304	임	2009	6,050	1,210
정선읍 신월리	304	임	2010	5,700	1,210
정선읍 신월리	304	임	2011	5,700	1,210
정선읍 덕우리	603	임	2010	2,950	520
정선읍 굴암리	56-11	임	2010	7,450	900
정선읍 굴암리	56-11	임	2009	6,170	1,110
정선읍 굴암리	56-11	임	2008	6,010	1,270
정선읍 굴암리	56-11	임	2007	5,760	635
정선읍 가수리	111	임	2010	5,280	1,010

정선군 공고 제2011—704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 대해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서를 통지 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1. 12. 29 ~ 2012. 1. 12 (15일간)

○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원)	반송 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17-11	전	1,28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42-5, 이동 103호 (봉림아트빌라)	조옥임	728,180	폐문부재

○ 부과사유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 의견제출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2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사항

-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정선군청 농업축산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초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며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 공매처분)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033-560-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29.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11-706호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2012년 예산편성 현황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1. 2. ~ 2012. 1. 21. (20일간)

2. 장 소 : 군청 게시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2012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현황

4. 기타사항

가.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560-2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2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편성현황

2012년도강원랜드복지재단예산편성현황

1. 세입

(단위 : 원)

관	항	목	2011예산	2012예산	증감
			(A)	(B)	(B)-(A)
총 계			7,065,298,040	7,684,123,568	618,825,528
재산 수입	기본재산	소 계	950,000,000	725,840,000	△224,160,000
	수 입	이자수입	950,000,000	725,840,000	△224,160,000
보조 금 수 입	후원금	소 계	5,010,739,200	6,030,000,000	1,019,260,800
		일반후원금	5,000,000,000	6,000,000,000	1,000,000,000
		지정후원금	10,739,200	30,000,000	19,260,800
이월금	이월금	소 계	708,293,674	680,000,000	△28,293,674
		전기이월금	741,117,774	680,000,000	△61,117,774
		전기미지급금의 지급(△)	29,783,010	-	(△29,783,010)
		전기예수금의 지급(△)	3,041,090	-	(△3,041,090)
상환금	상환금	소 계	8,400,000	10,275,840	1,875,840
		주거안정자금상환금	8,400,000	10,275,840	1,875,840
잡수입	잡수입	소 계	387,865,166	238,007,728	△149,857,438
		법인세환급금	178,482,840	166,554,000	△11,928,840
		기타예금이자수입	75,000,000	70,000,000	△5,000,000
		기타잡수입	134,382,326	1,453,728	△132,928,598

2. 세출

(단위 : 원)

관	항	목	2011예산	2012예산	증감
			(A)	(B)	(B)-(A)
총 계			7,065,298,040	7,684,123,568	618,825,528
사무 비	인건비	합 계	465,202,000	482,951,000	17,749,000
		급 여	309,336,000	321,150,000	11,814,000
		특별상여금	66,000,000	71,600,000	5,600,000
		퇴직금및적립금	33,000,000	33,700,000	700,000
		사회보험분담금	35,754,000	39,451,000	3,697,000
		기타후생경비	21,112,000	17,050,000	△4,062,000
	업 무 추진비	합 계	14,400,000	12,960,000	△1,440,000
		기관운영비	8,400,000	7,560,000	△840,000
		직책보조비	6,000,000	5,400,000	△600,000
	회의비	합 계	54,700,000	48,480,000	△6,220,000
		회 의 비	54,700,000	48,480,000	△6,220,000
	운영비	합 계	72,280,000	62,630,000	△9,650,000
		여 비	16,260,000	9,000,000	△7,260,000
		교육훈련비	11,700,000	9,450,000	△2,250,000
		수용비 및 수수료	37,120,000	36,980,000	△140,000
		공공요금	7,200,000	7,200,000	-
재 산 조 성 비	시설비	합 계	84,000,000	63,800,000	△20,200,000
		차량유지비	36,600,000	40,200,000	3,600,000
		주거안정자금대여금	40,000,000	-	△40,000,000
		자산취득비	5,000,000	5,000,000	-
		시설장비유지비	2,400,000	18,600,000	16,200,000
사업	합 계		6,210,739,200	6,810,000,000	599,260,800

비					
	진폐지원	소 계	1,900,000,000	1,900,000,000	-
	사업	재가진폐재해자지원사업	1,050,000,000	1,100,000,000	50,000,000
		진폐재활지원사업	200,000,000	180,000,000	△20,000,000
		타폐광지역진폐사업	650,000,000	620,000,000	△30,000,000
	이동복지	소 계	1,450,000,000	1,520,000,000	70,000,000
	사업	방문복지사업	870,000,000	870,000,000	-
		의료지원사업	580,000,000	650,000,000	70,000,000
	생활안정	소 계	1,085,739,200	1,400,000,000	314,260,800
	지원사업	사랑의보금자리사업	600,000,000	730,000,000	130,000,000
		행복일자리사업	475,000,000	540,000,000	65,000,000
		후원결연사업	10,739,200	30,000,000	19,260,800
		긴급구호사업	-	100,000,000	100,000,000
	복지역량	소 계	1,775,000,000	1,990,000,000	215,000,000
	강화사업	복지단체협력사업	800,000,000	890,000,000	90,000,000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650,000,000	650,000,000	-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170,000,000	190,000,000	20,000,000
		장애인행복만들기사업	60,000,000	100,000,000	40,000,000
		정책개발연구사업	50,000,000	160,000,000	110,000,000
		홍보사업비	45,000,000	-	△45,000,000
잡지출	잡지출	합 계	18,000,000	18,000,000	-
		잡 지 출	18,000,000	18,000,000	-
예비비	예비비	합 계	145,976,840	185,302,568	39,325,728
		예 비 비	145,976,840	185,302,568	39,325,728